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전국(장애인)체육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체전추진단을 해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국체전추진단 삭제(안 제6조)

나. 한시기구 존속기한 변경(안 부칙 제2조)

- 전국체전추진단 존속기한 : 2022. 5. 31 → 2022. 1. 12

다. 사업소의 위치 현행화

-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도로명 주소로 수정(안 별표 2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 및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체육시설관리과 및 전국체전추진단을”을 “체육시설관리과를”로 한다.

별표 2 구미시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미시 박정희로 123(상모동)

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2년 5월 31일”을 “2022년 1월 12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전국체전추진단, 총무과”를 “총무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)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 과, 관광진흥과, 체육진흥과, <u>체 육시설관리과</u> 및 <u>전국체전추진 단을</u> 둔다. ② (생 략) <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> 제2조(한시기구 존속기한) 조례 제1237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설치 된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5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6조(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 <u>체</u> <u>육시설관리과를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<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> 제2조(한시기구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2년 1월 12일</u>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~ ③ 생략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
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
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
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~ ④ 생략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주 영
	담 당	강 유 현
	담 당 자	박 민 주 (480-6773)